

교양교육과정 운영위원회 규정(4-4-19)

제정 : 2019. 01.28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 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기초교양교육대학의 학장과 보직교수 및 교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본교 전임교원 중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하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초교양교육대학 학장이 되며, 간사는 기초교양교육대학 실장이 된다.

제3조(임기)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있다. 단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소집 및 의결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교양 교육의 목표설정
- ②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③ 교양 교육과정의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
- ④ 기타 교양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6조(회의 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의 임무수행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소위원회) 각 업무영역별로 기본방침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① 소위원회는 당연직으로 학부장, 주임교수, 담당직원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학부장이 되며, 간사는 담당직원이 된다.

제8조(기타) 기타 사항은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0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